

의안번호	제 73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31일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임동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9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발의자 : 임동현 의원  
찬성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정상교 의원

##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을 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 · 시행(안 제4조)
- 라.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안 제8조)

- 사. 실태조사 등(안 제9조)
- 아. 교원의 연수 등(안 제10조)
- 자. 학부모 교육 등(안 제11조)
- 차. 지도 및 감독 등(안 제12조)
- 카.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 라. 기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54호  
(2021. 5. 21. ~ 2021. 5. 26.)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내용, 방법, 관련 교재, 교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학습 보조기·보조공학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설비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나 팬데믹(pandemic) 상태의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맞춤형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순회교육과 비대면 수업에서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이동과 사회 통합을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 진로 및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의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관리하고, 제4조 기본계획 및 제5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부모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정보제공과 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1. “특수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보조인력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 · 학습보조기기지원 ·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체험·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 ·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 사회적 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행 시  
특수교육의 각종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추진이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